

# 우리는 잠입 취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나

위은지 동아일보 DX본부 전략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내용이 담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영상이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공개되면서다.

영상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컸지만, 〈서울의소리〉 측이 몰카와 디올백을 제공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취재 방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상대가 범죄를 저지르게끔 함정을 파두고 지켜보는 것은 취재가 아닌 함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다수다. 언론은 관찰자이지, 사건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촬영본을 1년이나 묵히고 충선을 앞두고서야 공개한 것도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도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윤리적인 취재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과가 의미 있다면 어떠한 취재 방식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해외의 잠입 취재 사례 2건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잠입 취재는 '최후의 수단'

잠입 취재, 또는 함정 취재는 기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취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 신분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장을 취재해야 할 때 활용된다. 잠입 취재 중 정보를 모으기 위해 몰카로 찍거나 몰래 녹음하기도 한다. 기자는 취재할 때 본인의 소속과 본인이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잠입 취재는 그 원칙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자협회·언론사 윤리강령에서는 잠입 취재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

미국 라디오TV디지털뉴스협회(Radio Television Digital News Association, RTDNA)는 '몰래카메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속임수나 몰카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썼다.<sup>1)</sup>

- 습득된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상위 레벨에서의 큰 시스템 실패를 드러내거나, 개인에게 심각한 해가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익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여야 한다
- (속임수를 사용해 습득한 정보와) 똑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취재 방법)을 이미 써버린 경우
- (속임수를 이용해) 취재한 기자들이 속임수의 성격과, 속임수를 사용한 이유를 기꺼이 밝히고자 할 때
- 취재 행위를 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가 기사의 내용을 완전하게 취재하기 위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고, 뛰어난 장인 정신을 통해 우수성을 발휘할 때
- 잠입 취재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취재를 통해 밝혀진 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가 더 클 때
- 기자들이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의미 있고 협력적이며 심사숙고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을 때

반면, 아래의 이유로는 속임수나 몰카 활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 상을 받기 위해
-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 시간과 자원을 덜 들여 기사를 쓰기 위해
-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 기사의 주제가 비윤리적인 경우

<sup>1)</sup> Radio Television Digital News Association (n.d.). <Guidelines for Hidden Cameras>. URL: <https://www.rtdna.org/hidden-cameras>

RTDN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잠입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정상적인 취재 방법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잠입 취재가 불가피한지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잠입 취재로 피해를 볼 상대방의 상황 역시 고려 대상이다. 잠입 취재는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방식이다.

## 2. 2달러 배상금의 의미

미국에서 잠입 취재로 가장 치열한 취재 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1992년 미국 <ABC> 방송 '프라임타임 라이브(PrimeTime Live)'에서 방영한 '푸드 라이온(Food Lion)' 관련 보도다. <ABC>는 기자 두 명을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 라이온'에 위장 취업시켰고, 기자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위생적인 음식 재포장 관행을 몰래 촬영했다. 영상에는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새 쇠고기와 섞어 유통기한을 바꾸고, 오래된 치킨에 바비큐 소스를 발라 냄새를 숨겨 판매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보도가 나간 뒤 일주일 만에 푸드 라이온의 시가총액 13억 달러가 증발했다.

푸드 라이온은 <A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닌, <ABC> 측의 취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장 취업한 기자들이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푸드 라이온에 취업했음에도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매장에 불법 침입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1심 배심원단은 <ABC>가 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1심 판사는 손해배상액을 31만 5000달러로 삭감해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푸드 라이온이 <ABC>의 취재 방식에 대해 소송을 건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우회한 것”이라며 <ABC>의 손을 들어줬다.<sup>2)</sup> 그러면서 <ABC>가 푸드 라이온에 2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달러는 매장 불법 침입, 1달러는 직원의 충성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이다. 잠입 취재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보다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왜 소액이지만 배상금을 명했을까. 2심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마냥 초법적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판결문<sup>3)</sup>은 “(<ABC>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언론만을 겨냥

2)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3) Food Lion Incorporated v. Capital Cities ABC Inc., 194 F.3d 505 (4th Cir. 1999).

하거나,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을 언론에 적용하는 것이 취재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언론이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썼다.

사법부의 판단과 취재 방식의 윤리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당시 저널리즘 싱크탱크인 포인터 언론연구소(Poynter Institute)에서 윤리 문제를 연구한 밥 스틸(Bob Steele)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sup>4)</sup> “〈ABC〉가 광범위한 잠입 취재와 속임수를 사용한 이유로 공공 건강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면, 비상벨을 울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들은 잠입 취재를 한 뒤 6개월을 기다린 뒤 보도했는가?”

### 3. 기자는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여야



2019년 호주에서는 중동 대표 매체 알자지라(Al Jazeera)의 잠입 취재 다큐 ‘대량 학살을 판매하는 방법’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sup>5)</sup> 다큐에는 호주 극우 정당 ‘원 네이션(One Nation)’ 당직자들이 미국 내 최대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고위 관계자와 만나 호주의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문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당직자들이 NRA로부터 2000만 달러의 정치 자금 기부를 받으면 당 의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4) Steele, B. (1997, 4). ABC and Food Lion: The ethics questions. <RTNDA Communicator>, pp56. URL: <https://web.archive.org/web/20150717123938/http://www.poynter.org/uncategorized/2125/abc-and-food-lion-the-ethics-questions/>

5) Al Jazeera Investigations (2019, 3, 28). How to sell a massacre Part 1. <Al Jazeera> URL: <https://www.aljazeera.com/news/2019/3/28/how-to-sell-a-massacre-part-1>

언급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로저 뮐러(Rodger Muller) 알자지라 기자가 3년간 잠입 취재하며 몰래 촬영한 결과물이었다.

뮐러 기자는 취재 후기를 통해 본인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진행 과정 등을 공개했다. 취재 후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알자지라 탐사보도 유닛의 피터 찰리(Peter Charlie)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호주에 총기 옹호 단체를 만들어 NRA에 잠입 취재해보자’는 제안을 승낙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sup>6)</sup> 그는 ‘호주 총기 권리(Gun Rights Australia)’라는 가짜 총기 옹호 단체를 설립하고 미국 NRA 컨벤션 등에 참석하며 총기 옹호 업계에서 인맥을 구축해 갔다. 3년 후, 총괄 프로듀서는 그에게 ‘월 네이션이 NRA와 연결 고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뮐러는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제임스 애쉬비(James Ashby)를 만나 본인이 NRA와 연결 고리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애쉬비는 미국에서 NRA를 만나보고 싶다고 답했다. 기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월 네이션 측과 NRA의 만남을 주선한 뒤 이를 몰카로 촬영했다.

김건희 여사 디올 백 관련 보도처럼 기자가 적극적으로 함정을 판 것은 아니나 기자의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된 만남이 이뤄졌다.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호주는 1996년 총기 난사 사건으로 35명이 숨진 이후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게다가 당시 호주는 해외로부터 정치 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 뉴스레터에서 이 기사의 취재 윤리 문제를 다뤘다.<sup>7)</sup>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기자가 인터뷰한 저널리즘 전공 교수들은 해당 보도로 인해 밝혀진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몰카를 사용한 점과 기자가 직접 상황에 관여한 점 등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멜버른대(University of Melbourne) 저널리즘 발전센터 학장인 앤드류 도드(Andrew Dodd) 교수는 알자지라가 취재 방법을 투명히 공개했기 때문에 잠입 취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그는 “시청자들은 (알자지라의) 속임수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청한 내용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알자지라 기자 출신의 피터 그레스트(Peter Greste) 당시 퀸즐랜드대(University of Queensland) 교수는 “기자들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기자들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6) Muller, R. (2019. 3. 25). I went undercover to expose the US, Australia gun lobby. (Al Jazeera). URL: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19/3/25/i-went-undercover-to-expose-the-us-australia-gun-lobby>

7) Kwai, I. (2019. 3. 28). Decep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Right or Wrong?.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19/03/28/world/australia/al-jazeera-one-nation-nra.html>

#### 4. 잠입 취재를 남용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때

잠입 취재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취재 윤리가 지켜졌느냐에 대한 질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혹자는 잠입 취재의 결과물이 가져오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다. 취재 대상이 된 쪽에서 보도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수단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잠입 취재가 남용될 때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케네디스쿨 교수였던 마빈 칼(Marvin Kalb)은 푸드 라이온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sup>8)</sup>

“윤리적 기준이 모든 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 모두가 올바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뉴스를 취재할 때만 그렇고 그것을 보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사람이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점이다. 만약 기자들이 취재할 때 남을 속이면, 많은 사람은 기자들이 기사를 보도할 때도 속임수를 쓴다고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잠입 취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왔는지 돌아켜봐야 할 시점이다. 포털 사이트에 ‘잠입 취재기’를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가 나온다. 의미 있는 기사들도 많다. 다만 짧은 시간에 취재를 빠르게 하기 위해, 혹은 치열한 기사 경쟁에서 돋보이기 위해 잠입 취재를 선택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 기사들은 독자들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매일 뉴스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사치로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 내부에서 잠입 취재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디올백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만을 읊기거나 ‘우리는 저런 식으로는 안한다’고 선만 긋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8) Kalb, M. (1997. 3. 23). PRACTICING DECEPTION IN THE PURSUIT OF TRUTH. (The Washington Post).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opinions/1997/03/24/practicing-deception-in-the-pursuit-of-truth/59a7abcc-af36-4a65-af9d-80e61a9c5f95/>